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736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 (장성수산 마을정비형)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35조 제1항 및 『주택법』 제15조 제4항에 의거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(장성수산 마을정비형)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장성수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
2. 사업시행자

구 분	기 정	변 경	비 고
가.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성명	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	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	-
나. 주소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좌동	-

3. 사업개요

구 분	기 정	변 경	비 고
가. 대지 위치	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91번지 일원	좌동	-
나. 사업면적(m ²)	11,623.00m ²	11,594.10m ²	감 28.9m ²
다. 대지면적(m ²)	11,623.00m ²	11,594.10m ²	감 28.9m ²
라. 연면적(m ²)	8,086.09m ²	좌동	-
마. 사업 규모	아파트 3개동(영구임대 40세대, 국민임대 110세대 8층 이하) 및 부대·복리시설	좌동	-
바. 구조	벽식구조	좌동	-

4. 사 업 비 : 16,017,729 천원 (주택도시기금) 5,252,140천원(변경없음)
5. 사업기간 : 사업승인 고시일(2017.07.05.) ~ 2022. 12.(변경없음)
6. 기 타 : (변경없음)

관계 도서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(061-390-7473)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(062-360-3364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